

# 준정부기관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및 회계시스템 융합과정의 주요 회계현안과 시사점 -한국연구재단 도입사례를 중심으로-

김도형\*, 오광욱\*\*, 박성종\*\*\*

한국연구재단\*,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안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 Initial Adoption and Convergence of Accounting System under the K-IFRS by the Quasi-Government Entity : A Case o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Do-Hyeong Kim\*, Kwang-Wuk Oh\*\*, Sung-Jong Park\*\*\*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Dept. of Business and Economics, Korea University\*\*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준정부기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의 K-IFRS 도입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연구재단의 K-IFRS 도입에 따른 주요 회계현안을 도출하였고 한국연구재단의 대안과 이에 따른 재무성과 측정 및 도입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한국연구재단의 주요 회계현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형자산의 재평가문제를 시작으로 내용연수의 추정과 적용문제, 정부 이전 수입의 공시방법과 수익인식 시점의 문제 그리고 종업원 급여에 관련된 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재단의 총자산과 총부채가 감소되었고 경영수익도 감소하였으나 경영비용은 소폭 증가하였고 이는 향후 경영평가 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성공적 도입사례는 유사한 준정부기관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준정부기관, 회계시스템 융합, 주요 회계현안, 재무제표

**Abstract** The study introduces the case of initial adoption and convergence of accounting system under the K-IFRS by the quasi-government entit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ollowings are the methodology used in the study. (1) The study provides several accounting issues, their impact on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NRF and implications about NRF's financial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convergence of accounting system under the K-IFRS. (2) As examples of accounting issues, the NRF reflected several accounting difference such as revaluation of fixed assets, economic useful life, depreciation method, reclassification of investment, representation of transfer revenue from the government, the timing of revenue recognition, and employ benefits, etc. As results of adjustments under the K-IFRS, the NRF decreased 1,109 billion of total assets and 1,064 billion of total liabilities. Also, increase in operating expenses results a slight decrease in net income, which may have an impact on future management evaluation of the NRF. A successful case of K-IFRS adoption by the NRF which brings deep insight on adoption and convergence of new accounting system to other quasi-government entity.

**Key Words** : K-IFRS, Quasi-Government Entity, Convergence of Accounting System, Accounting Issue, Financial Statements

\* 본 논문은 제1저자인 김도형 석사의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본 연구의 개선을 위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고려대학교의 정규언 교수님과 이동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Received 31 March 2015, Revised 15 May 2015

Accepted 20 Sept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Kwangwuk Oh(Korea University)

Email: avnini92@korea.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라 한다.)의 도입은 회계정보의 국제적인 통일을 요구하는 재무보고 변경뿐만 아니라, 정책 및 프로세스 등 기업전반에 따른 내·외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내부 변화요인은 회계정책 결정을 통한 프로세스, 결산시스템 개선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으로 전반적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외부 변화요인으로는 회계기준의 변화, 연결재무제표의 주 재무제표화 및 전세계 모든 공시정보 통일화로 비교가능성 확보하기 위해 재무보고를 변경하도록 하였다.

2009년부터 K-IFRS를 도입한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준정부기관도 2011년부터 도입시점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K-IFRS 도입을 준비하면서 다양성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회계현안에 대한 심층분석 등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자체적으로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체 내부 회계역량이 강화되었다. 또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산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되는 효과도 있었다.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는 재무제표의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준정부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능적 측면에서 4대 보험, 연구, 장학, 안전관련 검사 등 국민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는 2013년 말 임직원 총인원이 73,497명<sup>1)</sup>으로 고용안정화 정책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 측면에서는 2013년 말 준정부기관의 영업수익(매출액) 104조원으로 이는 현대자동차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87조<sup>2)</sup>보다 상위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확인하였다.

이처럼 준정부기관은 국민생활 및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국민경제상 중요한 임무가 주어질 만큼 재무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기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사회전반의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준정부기관도 IFRS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회계신뢰도 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K-IFRS를 안정적으로 도입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도

입과정에서 검토된 주요 회계현안 및 재무상태 등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재단에게 도출된 현안별 정책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K-IFRS를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관리 기관에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입과정을 통해 제안된 재단의 주요 회계현안 및 대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무제표 표시방법과 관련하여 재단의 특성을 반영한 재무상태표(비금융업)와 포괄손익계산서(성격별 1형)로 선택하였다. 재무상태에 미치는 현안으로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계약기간 5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제시, 투자부동산의 정의에 부합하는 자산에 대하여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계정과목 재분류 및 원가모형을 채택하였다. 또한 정부보증금 및 수탁사업자금은 관련 이천수입과 위탁사업비의 미집행분에 대해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4조에 의해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여 자산과 부채총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다음으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현안은 종업원급여 인식시점의 변경을 통하여 연차수당 및 경영평가성과급을 회계연도 말에 반영하고, 보험수리적 가정을 도입한 퇴직급여를 재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각 현안별 대안으로 인하여 K-IFRS하에서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제시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재단의 K-IFRS 도입배경 및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준정부기관에 적용된 회계기준, 재단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더불어 재단이 K-IFRS 도입배경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재단의 K-IFRS 도입과정에서 검토된 주요 회계현안 및 의사결정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K-IFRS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 2. 재단의 K-IFRS 도입배경 및 과정

### 2.1 준정부기관의 준거 회계기준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 제39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준정부기관이 국민경제

1)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감안할 때, 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금주의 단식부기가 아닌 그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처리의 원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규칙을 개정하고 세부 처리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을 고시하였다. 규칙·기준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13조 등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경우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이 이원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1 회계연도 분 및 2012 회계연도 분 회계처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부칙 제2조<sup>3)</sup>에 의해서 외감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sup>4)</sup>을 적용한다. 한편 2013년도부터는 외감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FRS를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K-IFRS를 적용한다.

## 2.2 재단의 개요 및 K-IFRS 도입 배경

### 2.2.1 재단의 개요

재단은 2009년 3월 25일에 제정된 ‘한국연구재단법’에 의거하여 한국과학재단(1977.5.18. 설립), 한국학술진흥재단(1981.4.6. 설립),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2004.2.6. 설립)이 통합하여 2009년 6월 26일에 설립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다. 구체적인 설립목적은 주된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및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연구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sup>5)</sup>으로 지

- 3)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부칙 제2조(준정부기관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특례) 준정부기관은 2012 회계연도 결산까지 이 기준 제43조, 제45조, 제52조 및 제5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 4) 일반기업회계기준은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비상장 일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이다.(2009.11.27. 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 5)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정되어 있다.

재단의 2014년도 R&D 수탁예산은 총 3조 9,522억 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 2조 1,874억 원, 교육부 1조 7,001억 원 및 기타 64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13 회계연도 재단의 총 자산규모는 11,354백만 원이며 영업수익은 2,986,695백만 원, 당기순이익은 779백만 원이다. 조직 구성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5본부 1센터 8단 18실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연구재단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사업은 ①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②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③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④ ①~③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⑤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연구·운영 지원, ⑥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⑦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009년 통합 이전까지는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통합 후에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3호(2010.1.29.)에 의해 기관의 명칭이 변경 지정되고, 현재까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지정되고 있다.

### 2.2.2 재단의 K-IFRS 도입배경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빨라지고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국경이 낮아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자본조달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통일된 회계기준을 원하는 움직임이 대두되어 왔다[1]. 이에 우리나라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07년 3월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수립하여 2009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에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회사가 의무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했다[2]. 또한 2013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적용기업에 대해 전체 분·반기재무제표를 연결실체단위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IFRS 도입에 따른 실익<sup>6)</sup>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재단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전문기관), 교육부 이공사업 처리규정 제9조(전문기관)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9조(전문기관)에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 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http://www.fss.or.kr>: 2013.07.04.) 한국

K-IFRS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식이 개선된다.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국제회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08.12)<sup>7)</sup>하였고 국제회계기준 재단(IFRS Foundation) 회의에서 IASB 및 IFRS재단 이사들은 IFRS 도입 모범사례 발표('13.1)로 한국의 도입경험과 성공적인 정착을 높이 평가하였다. 둘째, K-IFRS 적용한 외국상장 국내기업 등은 외국기준에 따라 차이조정 의무가 면제되어 재무제표 이중 작성 부담이 경감<sup>8)</sup>된다. 마지막으로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확대 등으로 보다 목적 적합하고 적시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도 K-IFRS 도입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예로 2009년 6월에 '공공기관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이 발표된 바 있다.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의 이원화 체계에 대응하여 공공기관도 회계기준 적용 준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IFRS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회계신뢰도 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 이에 2010년 12월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7호)의 일부 개정을 통해 공기업은 2011년, 준정부기관은 2013년부터 적용시기로 하되, 2011년부터 조기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3].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2]. 첫째, 기업회계기준의 이원화 체계(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도 회계기준 적용 준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기관도 해외사법 및 자금조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자본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기관의 경제적·기능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선진화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2013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공기업의 총자산 548조, 영업수익은 153조이고, 준정부기관은 총자산 157조, 영업수익은 104조이

다[4,5].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사회 전반의 경제적·기능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도 IFRS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회계신뢰도 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IFRS 도입 국가는 G20(Group of 20) 국가와 싱가포르 등 118개 국가들이 포함된 138개 국가이다[17]. 해외 공공기관의 도입사례 및 시기로는 싱가포르,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홍콩) 및 아이슬란드(2005) 국가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을 경우 공공기관도 이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의 IFRS도입은 해당 국가경제 실체 전반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K-IFRS 도입방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한 대외 신뢰도 증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그 정책적 정당성을 가진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모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도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세부적인 도입 시기<sup>9)</sup>는 사업규모 및 도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기업은 2011년, 준정부기관은 2013년에 적용하기로 하되 2011년부터 선택적으로 조기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 2.3 재단의 K-IFRS 도입 절차 개요

재단은 2013년도부터 안정적인 K-IFRS 도입을 목표로 2012년 6월에 '한국연구재단 회계선진화 추진계획'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각 단계별로 재단에 미치는 재무적 및 비재무적 영향분석 등을 통한 K-IFRS 기초 재무제표를 산출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K-IFRS 도입이 재단의 경영, 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위하여 재무회계팀 주관으로 총 12명<sup>10)</sup>으로 구성된 IFRS 안정화 TF를 약 4개월('12.9.5.~'12.12.31.) 동안 운영하였다. 또한 안정화 TF는 타 기관 사례분석 및 K-IFRS 내·외부 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해당 업무별 주기적인 검토 및 피드백을 통한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다.

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2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7)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유럽증시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함  
8) 과거 K-GAAP을 US-GAAP으로 전환비용은 일반기업의 경우 평균 3.7억 원, 금융회사의 경우 평균 27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2012.3월말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증시상장 현황은 KT 등 64개사가 미국 등 9개국에 상장되어 있다.

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9.6.17.),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방안 발표

10) 재단 안정화 TF는 회계, 자금, 예산, 급여, 경영평가 및 정보업무 부서(11명, 내부직원)와 외부전문가(1명, 회계사)로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인 도입절차는 다음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K-IFRS 도입이 재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재무자료 및 세부내역 검토 등의 예비적 분석, K-IFRS해설서 및 타 공공기관 사례검토 등을 통한 벤치마킹 및 분석항목 중요도 검토를 하였다. 여기서 검토된 결과를 바탕으로 K-IFRS기준서별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가 나는 총 42개(35개 의무사항, 7개 선택사항)현안들을 주요 분석 대상항목을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항목에서 재무적 영향분석 및 현안별 중요도에 따라 10개의 주요 현안사항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분석 대상항목에 대한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재무적, 프로세스 및 시스템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재무적 영향분석은 상세분석서 작성 및 예비 금액적 효과 산출하고 프로세스 및 시스템 영향분석을 통하여 주요 차이항목에 대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대하여 대안 도출하였다. 재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한 심화분석 및 대안이 포함된 기준서별 상세분석서(CE, Component Evaluation)를 산출물로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재단의 K-IFRS 하에서의 적용될 회계정책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른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대한 이슈메모와 계정별 회계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회계매뉴얼을 도출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준정부기관에 제공한 K-IFRS XBRL<sup>11)</sup> Taxonomy<sup>12)</sup> 기준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의 회계계정과목(CoA, Chart Of Account) 및 예산항목 간의 코드를 점검을 하였다. 이에 계정과목 추가, 레벨수준 변경 및 연계작업(Mapping) 등을 포함한 개선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표준화된 계정과목 체계 구현을 완료하였다.

3단계는 이전 1~2단계에서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전환일(2011.12.31.) 기준의 K-IFRS 기초 재무제표 산출하였다. 추가적인 후속 조치사항으로 재단의 2012 회계연도 회계결산 완료 후 2012 회계연도에 대한 K-IFRS 반영한 전환 재무제표를 산출하였다. 추가적으

로 2011 회계연도 기초 재무상태표와 2012 회계연도 연간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단의 회계감사인이 산출된 자료의 적합성 검증하는 방식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하여 전환 재무제표를 확정하였다.

#### 2.4 국내 K-IFRS 도입 주요사례 검토

김정옥(2010)의 연구에서는 2006년에 도입을 준비하여 2009년부터 조기 도입한 KT&G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사례를 분석하였다. KT&G는 2001년부터 록셈부르크 증권거래소 증권예약증서를 상장하고 있다. 이에 K-IFRS를 조기에 도입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유인이 존재하여 조기 도입을 추진하였다. K-IFRS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KT&G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영진의 적극적인 K-IFRS 도입의지가 중요하다. 둘째, 조직을 적절하게 정비하고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셋째, K-IFRS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K-IFRS 도입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넷째, 국내의 성공적인 회사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무상태와 경영성고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다[6].

전준구·김양환·이상철(2010)은 한국전력그룹의 IFRS 도입 사례를 통해 한국전력그룹이 IFRS를 도입하는 과정, 도입 특성 및 효과를 분석하였다. 2007년 9월부터 IFRS에 대한 도입진단 실시를 시작으로 기준차이에 따른 예비분석, K-GAAP과 K-IFRS 차이에 대한 상세분석을 통한 회계정책을 수립하였다. IFRS 도입으로 기업실질에 맞는 회계정책 및 규정 수립으로 순자산이 증가되고, 부채비율이 감소하며, 재무건전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다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IFRS를 적용할 때,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IFRS 도입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과 운영이 요구된다. 셋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하여 전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유되어야 한다. 넷째, 회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육성이 필요하다[7].

표경호(2012)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과정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대상으로 도출

11) XBRL은 재무정보의 작성·유통·분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99년 비영리 국제 컨소시엄인 'XBRL International'이 제정한 기업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로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의 약자다.

12) Taxonomy는 XBRL의 구성요소인 표준계정과목체계, 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의 명칭, 계산식, 표시순서, 계정과목 간 관계, 회계기준 근거조항 등을 체계적으로 집제한 정보이다.

된 현안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사항에 대해 제시하였다. K-IFRS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부채 비율 감소, 당기순이익 증가 등 재무건전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K-IFRS 도입으로 인해 회계 프로세스의 구축 및 개선 등을 통해 회계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K-IFRS 도입 프로젝트를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1단계는 영향분석을 통한 실행과제를 정하는 예비 및 분석단계로 K-IFRS과의 차이분석, 회계 정책수립 및 매뉴얼 제정 등을 수행하였다. 2단계는 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단계로 평가원 내 행정지원시스템 개선 및 K-IFRS 적용한 재무정보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실제 적용을 하는 적용단계로 이루어져 있다[8].

마희영·박성중(2012)은 K-IFRS의 도입과정 및 재무적 영향을 특수한 업종으로 분류되는 방송기업인 (주)SBS 미디어홀딩스를 통하여 사례 분석하였다. 사례에서 SBS의 K-IFRS도입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고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첫째는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는 단계 그리고 둘째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IT 부문의 system 변경 및 구축 범위 결정 단계로 나누었다. 해당 사례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업 고유의 특수한 계정인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방송콘텐츠 자산)에 대한 기준변경 영향을 분석한 것이며 또한 연결 대상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자금(금액) 측면에서 분석한 점이었다[9].

정성호(2013)는 공공기관의 IFRS 도입이 재무상태, 경영성과, 재무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분석(T-test<sup>13)</sup>하였다. IFRS의 도입에 따른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IFRS 도입은 회계기준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공기관별로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항목이 달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제한된다. 둘째, 공공기관의 매출 원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요금인상을 주장할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IFRS의 도입이 공공기관의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그 비율의 변동 폭마저 크지 않다. 넷째, 재무정보의 단절, 비교가능성

의 제한, 비재무적 정보까지 확대 공시 등의 문제는 시급히 치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공공기관의 국제회계제도의 도입의 다양한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는데, 준정부기관까지 국제회계기준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현실여건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0].

박연희·조석희·박성진(2013)은 A 공단을 중심으로 준정부기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 사례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A공단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4개 부문, 24개 항목에 대해 상세분석을 통한 선택가능한 대안과 채택한 회계정책을 사례중심으로 나타났다. 또한 K-IFRS 도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 원가의 감가상각에 대해 상각단위를 세분화할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토지 등의 자산의 손상차손 검토를 위한 손상검토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금융자산의 공정가치평가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비유동자산의 매각거래를 통한 회수가 예상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위한 매각예정분류 기준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의 세법 기준에 따른 세무보고 및 경영진 보고 등을 위하여 연결결산 프로세스 자동화 구현을 통한 내부거래 관리방법, 모니터링 등을 고려해야 한다[11].

기존의 K-IFRS 도입사례들과 비교하면 재단의 도입 사례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존재한다. 재단의 K-IFRS 도입과정은 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의 도입 절차 및 방식은 유사했음에도 준정부기관이면서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재단은 연구비 관리 및 집행 등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자산 차감항목인 정부보조금 및 수탁사업자금 계정과목으로 인해 자산과 부채금액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재단과 같이 공공기관 구분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A공단은 재무상태표 상에서 정부보조금 계정과목은 표시하고 있지만, 수탁사업자금 계정과목은 표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동일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더라도 업무 형태 및 기관의 회계정책에 의해 결정되므로 표시 방법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면서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12개 기관에서도 표시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재무상태표 상에 수탁사업자금 계정과목이 표시된 기관은 8개 기관이고,

13) T-test란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유무를 판단하는 통계적 검정방법으로, “두 모집단의 평균 간의 차이는 없다”라는 귀무가설과 “두 모집단의 평균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대립가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통계적 검정방법이다.

표시가 없는 기관은 4개 기관으로 파악되었다[5,12]. 이로 인해 기존 K-IFRS 도입사례와는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다른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 3. 도입과정에서 검토된 주요 회계현안 및 의사결정

#### 3.1 K-IFRS 도입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

도출된 42개 주요 분석 대상항목에서 K-IFRS 도입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거나 현재로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 제외 등 재무적 영향분석 및 현안별 중요도에 따라 10개 주요 현안사항을 도출하여 각 현안사항별 상세분석을 수행하였다. 제단의 주요 현안사항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재무제표 표시방법, 의무적 도입의 이연법인세, 최초 도입 시 장부가액,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유형자산, 수익인식 기준, 정부보조금 및 수탁사업자금, 비용 인식시점의 경영평가성과급 및 미지급연차유급휴가수당, 보험수리적가정의 퇴직급여채무, 연결재무제표, 인식요건 기준 마련의 무형자산, 재분류 및 원가모형의 투자부동산이다. 이하에서는 주요 회계현안별 이슈와 대안을 현안별로 제시한다.

#### 3.2 재무제표의 표시

재무제표의 표시(K-IFRS 제1001호)에 따르면, 규정 중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제시보다는 회계처리 기본원칙을 제시하는데 주력한다. 이로 인해 회계처리 선택권 확대하여 기관 스스로 경제적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 방법을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각 회계처리 판단근거를 설명하기 위한 주석공시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의 재무제표 구성요소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K-IFRS가 도입되면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sup>14)</sup>가 되어 주석사항에 포함되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항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K-IFRS에서는 최소한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항목을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고, 상세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준정부

기관의 계정체계(Taxonomy)는 규칙 제16조에 의해 적용해야 한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2012년 9월에 공기업 IFRS 서식을 기준으로 의견수렴 및 기관 특성상 필요한 계정과목에 대해 추가 검토 등을 통해 확정된 계정체계를 제시하였다.

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표의 양식에 있어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에서는 재무상태표의 구분표시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유동/비유동 항목을 구분하고 각각 유동성 순서에 따라 배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K-IFRS에서는 표시되어야 할 항목을 표시하고 있으며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본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상부 등 기타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자본은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 요소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포괄손익계산서 양식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형과 사업형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K-IFRS에서는 비금융업에 한하여 기능별, 성격별(성격 1형 및 성격 2형)의 3가지 포괄손익계산서 형태로 구분하되, 기관별 사업형태, 관리적 측면 및 이해관계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이와 같은 포괄손익계산서 유형 선택 후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기관들이 선택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형태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Types of income statement[13]

type		Major type
functional		①materiality of own revenue, ②classification of sales and COGS
n a t u r e	I	①classify direct cost with other costs: i) unclassified sales and COGS ii) classified operating expense and administrative expense
	II	unclassified operating expense and administrative expense

법인의 업무분류는 크게 금융업<sup>15)</sup>과 비금융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제단의 업무 유형은 비금융업에 해당한다. 사업형태는 정부출연금으로 기관고유사업을 직

14) 의감법 제1조의2(정의)에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 서류를 말한다.

15) 금융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에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접 수행하는 형태와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각 부처의 위탁사업비에 대한 위탁수행 형태 등으로 구분된다. 이로 인하여 재단의 재무제표 표시방법으로 재무상태표는 비금융업으로 포괄손익계산서는 기능별 및 성격별(성격1형 및 성격2형) 중에서 성격별 1형의 K-IFRS 계정체계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성격별 1형 유형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채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의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체계와 유사하여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시스템 개선작업 최소화로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이해측면에서는 사업원가와 관리운영비가 분리 표시되어야 효율적이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의 계정과목체계와도 비교가능성이 높아진다.

K-GAAP(business type)		K-IFRS(nature 1 type)	
I. Total Business Revenue	28,854	I. Revenue	28,849
II. Total Business Expenses	28,867	II. Operating Expense	28,866
III. Business Income(Loss)	(13)	III. Operating Income(Loss)	(17)
IV. Non Business Revenue	470	IV. Other Income	27
V. Non Business Expenses	454	V. Other Expense By Function	95
VI. On going Business Income(Loss) Before Income Taxes Expenses	3	VI. Other Gain(Loss)	-
VII. Income Taxes Expenses	-	VII. Finance Income	83
VIII. Net Income(loss) Income Statement	3	VIII. Profit(Loss) before Tax	(2)
		IX. Income Tax Continuing Operation	-
		XI. Profit (Loss)	(2)
		XII. Other Comprehensive Income	(4)
		XIII. Comprehensive Income	(6)

[Fig. 1] Changes in accounts of NRF

### 3.3 주요 자산 계정

#### 3.3.1 유형자산

##### 가) 유형자산K-IFRS 최초 도입 시 유형자산 장부가액 결정

K-IFRS의 최초채택(K-IFRS 제1101호)에 따라 K-IFRS의 완전한 소급적용이 아닌 관련 의무적 예외항목과 특정 선택적 면제조항을 적용하였다. K-IFRS 최초 채택 시 재단은 유형자산(K-IFRS 제1016호)을 소급 적용하여 전환일 현재 장부금액을 산정하거나, K-IFRS의 최초채택(K-IFRS 제1101호)의 면제 조항에 따라 간주원가를 선택하여 전환일 현재 장부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K-IFRS 최초 도입 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결정은 총 3가지 대안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기존의 장부가액을 소급적용하는 방법(소급적용)과 전환일의 공정가치

를 장부가액으로 적용하는 방법(대안 1) 및 과거에 재평가할 수 행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 재평가액을 적용하여 장부가액으로 적용하는 방법(대안 2)이다. 다만, 재단은 과거에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안 2를 선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소급적용과 대안 1 중에 고려사항(감가상각방법 등)에 대한 영향분석과 장단점 파악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해야 한다.

재단은 각 대안별 비교 및 검토한 결과, 자본의 변동성을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유형자산의 최초 장부가액을 기존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소급적용 대안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소급적용 대안 방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급적용 대안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없을 경우 원가를 그대로 최초 취득원가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이 K-IFRS에 적합한지 여부의 영향분석 결과, 상각방법 및 잔존가액은 적절한 것으로 파악되며 기존의 장부가액을 승계 시 금액적 영향이 없어 별도의 장부가액을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 둘째, 대안 1은 최초 도입시점의 자산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 대비 상승한 경우, 자산 및 자본이 증가하며 미래 인식해야 할 감가상각비의 증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공정가액 산출 방법론 정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정가치 산정에 따른 비용 및 업무 부담이 증가된다.

##### 나) 유형자산 평가모형

유형자산(K-IFRS 제1016호)에 따르면, 유형자산 최초 인식 이후 측정에서 평가방법을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재단은 현재 원가법에 따라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장부가액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및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다.

재단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에 대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모형 선택이 회계정책 및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 결과, 최초 인식 후 측정에 대한 대안으로 원가모형을 선택하였다. 재단이 원가모형을 선택한 이유로는 원가모형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는 표시방법으로 현행 원가법 회계처리방법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현재의 회계정책이 유지가 가능함으로 인해 실무적으로도 효율적이다. 반면, 재평가모형은 적격성



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평가시점에 유사장소, 조건 하에 있는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치로 평가해야 함으로 인하여 재평가관련 회계처리 및 공시자료 산출 등과 관련된 프로세스 및 시스템 신규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재평가 시행주기, 재평가액 산정방법 등의 규정 제정이 요구되고 주기적인 공정가액 산출을 위하여 측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 감가상각방법

K-IFRS 제1016호 문단 60과 62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하고, 예상 소비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이에 재단의 현재 상황에서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고려하고 감가상각방법 산출의 편의를 위해, 해당 자산의 취득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이 사용 초기에 더욱 소비되기 보다는 사용기간 동안 일정하게 사용된다고 형태로 가정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정액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관련 K-IFRS 규정에 따라 향후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였다.

#### 라) 내용연수

K-IFRS 제1016호에 따르면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 재검토하여야 하며,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K-IFRS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진진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재단의 유형자산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보다는 유형자산 분류별로 건물에 대해서는 20~40년, 구축물은 20년,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및 공구기구비품은 4~5년으로 세법상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 재단에서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지만 현재 사용되는 유형자산이 존재하는 바, 상세분석 단계에서 재단의 개별 유형자산 속성 등을 통하여 재단의 적용 내용연수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은 경제적 내용연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자산(기계장치, 책상 등)의 실제 평균사용연수가 기계장치에 대해

서는 6.73년, 공구기구비품 중 책상 및 의자는 7.18년, 캐비닛에 대해서는 7.39년으로 산출됨으로 인해 경제적 질 내용연수를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을 실제 변경에 반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적용에 따른 효익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비용-효익 관점<sup>16)</sup>에서 재단은 조달청 고시(내용연수), 법인세법 내용연수, 실제 평균사용기간 및 정부보조금 효과로 인한 재무적 영향 미치지 않는 점을 중요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리고 실무적 현실을 감안하여 재단은 현행의 내용연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3.3.2 투자부동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K-IFRS 제1040호에 따르면,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투자부동산으로 인식한 경우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해야 한다. 각 모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모형 선택이 회계정책 및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원가모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각 모형의 특징과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공정가치모형은 재무제표 상 기말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 변동 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재무제표에 공정가치로 반영되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과 공정가치 모형 적용을 위해 매년 감점평가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원가모형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상각하는 특징을 가진다. 현재와 동일한 평가방법이므로 별도 프로세스 변경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주식 공시

16)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이다. 재무정보의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되고,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적합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충실하게 표현된 재무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정보이용자가 더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자본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경제 전반적으로 자본비용을 감소시킨다. 개별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도 더 많은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효익을 얻는다. 그러나 정보이용자가 각자가 목적적합하다고 보는 모든 정보를 일반목적재무보고에서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지 않다.(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QC35, QC37)

를 위한 별도의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재단이 보유한 부동산 중 일부는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단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형자산으로 구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전환 시점에 투자부동산의 정의(임대목적)에 부합하는 부동산의 임대가 종료되어 자가 사용되는 시점인 점과 별도 프로세스 변경이 필요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가모형을 채택하였다. 재단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분류는 판단하는 절차에 따라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으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투자부동산으로 계정대체를 실시하였다. 한편 관련 정부보조금 효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3.3.3 무형자산

무형자산(K-IFRS 제1038호)에 따르면,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자원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요건을 충족하면서 만기가 없고 시장에서의 차익실현보다는 사용으로 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회원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제11장 ‘무형자산’에 따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지출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있다. 반면,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인식한 취득원가에 다음과 같은 무형자산별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이용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현재 장부가액으로 인식하고 있다.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은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조건을 충족하면서 만기가 없고 시장에서의 차익실현보다는 사용으로 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 중이므로 무형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 한편 해당 금액만큼 기타의 무형자산 계정과목의 금액이 증가하나 정부보조금 금액만큼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

감하기 때문에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 3.3.4 임차보증금

K-IFRS 제1039호에 의하면 보증금을 포함한 장기성 채권은 최초인식 시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임차보증금은 명목가치(취득가액)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K-IFRS 도입 전의 재단은 임차보증금을 취득가액 표시하고 비유동자산 계정과목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정가액의 측정이슈가 대두되었다. 결국 K-IFRS 도입으로 장기성 채권인 임차보증금이 금융상품에 해당함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나 재단은 일정한 기간 또는 금액 이상인 보증금의 경우에만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계약기간 및 금액에 대한 대안 1, 2를 마련하여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결정하였다. 각 대안의 내용은 <Table 2>과 같다.

<Table 2> Decision for rent deposit

category	choice 1	choice 2
contract period	>=3 years	>=5years
materiality	<10 mil. won	>=10 mil. won

보증금 계약기간에 대해서 대안 1은 3년 이상으로 기간이 실질에 가까운 회계처리로 인해 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과 최초 인식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공정가치 평가와 후속적 회계처리를 실시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대안 2는 재단의 대부분의 보증금 계약기간이 5년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공정가치 등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장점과 정보의 정확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일정부분 반영하지 못할 단점이 있다. 중요성 금액에 대해서 대안 1은 소액의 보증금까지 모두 관리함으로써 재무제표가 좀 더 실질에 가까운 정보 표시할 수 있는 장점과 소액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선급임차료 상각 등으로 인해 기말 결산 절차가 복잡해 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대안 2는 유의적으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높은 고액 보증금만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장점과 소액보증금에 대한 공정가치 미반영으로 재무제표와 실질 사이에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재단 특성 및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한 대안 결정사항은 보증금 계약기간에서는 5년 이상, 중요성 금액에서는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정가치로 인식하기로 한 대안 2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정보의 정확성과 정보 산출과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다. 둘째, 모든 대상을 공정가치 평가를 할 경우에 금융자산에 객관적인 손상사건이 발생하였는지 매 회계연도 말에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셋째, 장기보증금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하더라도 같은 금액을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인 정부보조금으로 표시하고 있어 자산·부채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만, 향후 발생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계연도 말에 검토하여 반영하기로 하였다.

### 3.3.5 정부보조금 및 수탁사업자금

재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칙 부칙 제2조17)에 의해 2011 회계연도 분과 2012 회계연도 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2013 회계연도는 규칙에 따른 K-IFRS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서의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Table 6>과 같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정부보조금(K-IFRS 제1020호)에서는 이연수익 또는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Table 3> GAAP difference in government grants[13]

Account	Public GAAP	K-GAAP	K-IFRS (1020)
government grants	deferred revenue or contra asset	contra asset	deferred revenue or contra asset

source : FY 2013 Specialization Training Book for Quasi-government Entity, p18,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3.

특히, 잔여 정부보조금 및 위탁자산에 대해서는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4조의 2 및 제44조 318)의 신설된 조항을 2013 회계연도부

- 17)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2조(준정부기관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특례) 준정부기관은 2011 회계연도 분 및 2012 회계연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제2조제5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 18) 제44조의2(잔여 정부보조금 등의 처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정부 등 제3자로부터 받은 제44조의 정부보조금 또는

터 적용하였다. 단,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결정된 이후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집행되지 아니하여 비용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자금을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경우, 즉 정부보조금 중 집행되지 아니하여 비용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자금은 ‘정부보조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관련계정에서 차감 표시한다. 또한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하여 비용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자금은 ‘수탁사업자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관련 계정에서 차감 표시한다. 자산의 차감항목 표시 계정과목은 <Table 4>과 같다.

<Table 4> Presentation of accounts for government grants and entrusted assets

code #	government grants for asset	residual gov. grants	residual entrusted business expenses	entrusted business Asset
44-1	(gov. grants)			
44-2		(gov. grants)	(entrusted business funds)	
44-3				(entrusted business funds)

재단은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출연금 등 정부보조금을 회계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아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는 잔액에 대하여 2012 회계연도 분까지는 부채항목인 ‘선수금’ 계정과목으로 설정하고, 비용으로 인식되는 시점에 선수금을 차감하고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2013 회계연도 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4조의2를 적용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한다. 또한, 재단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자산을 연구기관 등에게 지급하며, 연구기관의 연구 종료 후 집행잔액에 대하여 국고반납에 대한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

제48조의 위탁사업비 중 회계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아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은 잔액은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4조의3(위탁자산의 처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정부 등 제3자로부터 관리·처분 등의 목적으로 위탁받은 자산은 동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8조(위탁사업비의 인식)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게 위탁 또는 대행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지급받은 사업비 등은 집행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과 대응하여 사업수익으로 인식한다.

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4조의3의 따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위탁받은 자산을 회계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아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은 수탁사업자금에 대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있다.

### 3.4 수익인식

수익인식 기준(K-IFRS 제1018호)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재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수탁사업수익은 K-IFRS에 우선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비용과 상계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한다. 관련 비용과의 대응을 위해 수익인식 시점은 사업자금을 수취할 때가 아닌 사업수행으로 비용을 인식할 때이다. 재단의 영업수익은 기관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수익과 정부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수익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수익을 이전수입하며 정부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수익을 수탁사업수익이라 한다. 여기서 수탁사업수익은 수탁사업비용과 직접적으로 대응되고 사업별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 수익이다.

모든 사업의 흐름은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단의 기관고유사업인 이전수입과 수탁사업수익의 재원과 표시형태를 명확히 분리되어 관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이전수입의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과거 재단의 회계처리는 정부로부터 받는 수취시점에 인식하고 있었으나, K-IFRS를 우선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6조 및 제48조를 적용하여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수익인식 시점을 변경토록 하였다.

### 3.5 인건비 계정

재단의 종업원급여(K-IFRS 제1019호)규정의 적용에 따른 주요 회계현안은 연차유급휴가수당(단기미지급비용), 경영평가성과급(유동종업원급여충당부채) 및 퇴직급여(순확정급여부채)에 따른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의 변동이다.

첫째, 연차유급휴가수당과 관련하여 K-IFRS 제1019호 문단 11조에 따라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시 말하면,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

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익년도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영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60~61조 등에서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재단의 경우에도 내부규정에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금전보상의무(연차휴가 미사용수당)를 면제하는 제도인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예산 등의 사유로 인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결산 시에도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연차유급휴가수당 금액 산출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근로자별 사용과 미사용한 연차 개수를 파악하여 사용률을 도출하고, 통상임금에 종업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단은 K-IFRS 제1019호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말에 산출방법을 통해 금액을 추정하여 결산 시 재무제표에 해당 추정금액을 비용(급여)과 부채(단기미지급비용)로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 경영성과급과 관련한 규정에 따르면, 경영성과 및 경영평가 기준에 따라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영평가성과급을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K-IFRS 제1037호)에 따라 비용과 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이유는 경영평가성과급은 종업원급여(K-IFRS 제1019호)에 해당 하에도 합리적으로 추정된 금액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단은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공운법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 받는다. 전년도 결산시점에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해당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에 대해 재단은 K-IFRS 제1019호에 의하여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연도가 아닌 전년도 근무한 연도에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을 비용(급여)과 충당부채(유동종업원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변경기로 하였다.

셋째, K-IFRS 제1019호에서 퇴직급여제도는 보험수

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의 부담주체에 따라 확정기여형(DC)퇴직급여제도와 확정급여형(DB)퇴직급여제도로 구분한다.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는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며,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된다. 이와 달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는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을 재단이 부담한다. 자격 있는 보험제리인 등에 의해 미래의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시장수익율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하는 보험수리적 기법인 예측단위적립 방식을 사용하여 금액을 산출한다.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 승진 및 그 밖의 관련성 있는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하고, 할인율은 회계연도 말 현재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의 재단은 청산가치의 개념에 따라 회계연도 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K-IFRS 제1019호를 적용 하에 따라 형태별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를 함께 운용하게 되었다. 또한 병행 운영으로 인해 회계처리도 각 유형별 퇴직급여 운영제도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었다. 우선 확정기여형(DC)퇴직급여제도 하의 사외적립자산은 수탁자의 관리 하에서 기금형태로 재단의 자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반면 확정급여형(DB)퇴직급여제도 하의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계리법인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재단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외부 전문가 활용 시 적은 비용으로 신뢰성 있는 퇴직급여채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 3.6 법인세비용

법인세 비용은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 구.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서는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여 미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문단 20)에 인식되었다. 한편 K-IFRS 제1012호(문단 24)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용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과세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는

것으로 인식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연법인세에 대한 현행 기준과 K-IFRS의 주요한 차이의 요약표는 <Table 5>과 같다.

<Table 5> GAAP difference for deferred tax

Category	K-GAAP	K-IFRS
current/non-current	current/non-current	non-current only
tax rate	marginal	average
realization of deferred tax asset	certain (80%)	more likely than not (50%)
foot note	not stipulated	stipulated

재단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K-IFRS 도입 이전에는 전체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만큼 증대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중요성<sup>19)</sup> 관점에 따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K-IFRS 관련 규정을 도입하면서 이연법인세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에 소멸시점 및 세법을 고려하여 세무조정 항목별로 일시적차이 해소시점을 추정하여 관련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및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3.7 검토된 현안 및 의사결정사항 정리

재단은 K-IFRS 도입과정에서 검토된 현안은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의 표시,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임차보증금, 정부보조금 및 수탁사업자금의 자산계정, 수익인식시점, 중업원급여와 법인세비용의 부채 및 비용계정이다. 단, 연결재무제표는 재단의 부설기관<sup>20)</sup>이 존재하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세한 기

19) 누락 등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중요성의 개념 ISA 320-2) 수행중요성(Performance Materiality)이란 미수정왜곡표시와 미발견왜곡표시의 합계가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을 초과할 확률을 적절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①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보다 작게 설정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② 감사인이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수준(들)보다 작게 설정한 금액을 말하기도 한다.(중요성의 개념 ISA 320-9)

20)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구.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은 2011년 5월 1일자로 재단 부설기관으로 편입되었으나 2014년 1월 14일자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이관됨

술은 제외하였다. K-IFRS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의 주요 대안 및 결정사항은 <Table 6>와 같다.

<Table 6> Summary of issues and decision

category	issue	decision	reason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financial vs. non-financial	non-financial	business type of the NRF is non-financial
income statement	functional vs nature I, II	nature I	classified busines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to enhance comparability
initial amount of fixed assets	FMV at retroactive date or revaluated value	retroactive	immaterial of initial amount
valuation model of fixed asset	cost vs revaluation	cost	maintain consistency of accounting policy
depreciation	Straight line/declining balance/ unit of production	straight line	constant economic benefits from fixed asset
change of useful life	feasible for portion of fixed asset	do not change useful life	immaterial in terms of amount by change of useful life
investment asset	cost vs revaluation	cost	end of rent business
intangible asset (membership)	regognition criteria as intangibles	intangible	feasible for criteria
rent deposit	contract period : >=3 or 5 yrs amount : >= or <10mil won	5 yrs, >=10mil	materiality and business efficiency
wage (bonus)	recognition or not	expense/provision	present with reasonably estimated amount
wage (pension)	self estimation vs actuary	actuary	enhance reliability
income taxes	recognition or not	recognition	mandatory under the K-IFRS
revenue (transferred revenue)	decide the recognition timing	allocate considering accrued period	following GAAP code # 46 and 49
Gov. Grants/ entrusted business funds	Add as new account	contra asset account	following GAAP code # 44-2 and 44-3

#### 4. K-IFRS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재단이 K-IFRS 도입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미집행

액에 대한 정부보조금 및 수탁사업자금 표시, 종업원의 경영평가성과급 추정치를 유동종업원급여충당부채로 계상, 확정급여형(DB)퇴직급여제도 하의 보험수리적 평가 방법을 통한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로 인식, 조정액에 대한 법인세비용에 대하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4.1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분석

2012년말 기준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K-IFRS로 전환했을 때 재단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Impact on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unit : won)

category	asset	liability	equity
K-GAAP	120,974,779,492	117,083,453,240	3,891,326,252
<adjustment>			
defined benefit	-	(463,430,813)	463,430,813
employ benefit	-	860,278,054	(860,278,054)
deferred tax	-	26,632,045	(26,632,045)
Gov. Grants/ entrusted business funds	(110,939,939,570)	(106,866,593,406)	-
others	-	-	(4,073,346,164)
total adjustment	(110,939,939,570)	(106,443,114,120)	(4,496,825,450)
K-IFRS	10,034,839,922	10,640,339,120	(605,499,198)

source : Public Institution ALIO(All public information in One) System, NRF, No 23. report of audit

자산항목 중에 K-IFRS 전환으로 재무상태 조정금액은 1,109억 원으로 대부분은 당좌자산이며, 당좌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은 정부보조금과 상계처리로 인하여 재무적 영향은 없다. 정부로부터 받은 정부보조금과 위탁사업비 중 회계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아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은 잔액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차감계정인 정부보조금 및 수탁사업자금으로 처리하여 1,109억 원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K-IFRS 전환으로 인한 자산총계는 1,109억 원(91.7%)이 감소한 100억이다. 부채항목에서 K-IFRS 전환에 따른 조정금액은 퇴직급여채무를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평가로 인해 순확정급여부채 4.6억 원 감소, 경영평가성과급을 합리적으로 추정금액을 종업원충당부채로 인식하여 8.6억 원 증가, 연차수당 및 퇴직급여채무 등에 대한 이연 법인세부채 0.3억 원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K-IFRS 전

환으로 인한 부채총계는 1,064억 원(90.9%)이 감소한 106억 원이다. 또한, 자본총계의 경우에는 K-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금액 조정과 현금주의로 인식하는 일부 수익을 발생주의로 전환에 따른 차이의 수익인식 변경으로 인해 이익잉여금 45억 원(115.4%)이 감소하였다.

### 4.2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2012년말 기준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K-IFRS로 전환했을 때 재단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8>과 같다.

<Table 8> impact on income statement

(unit : won)

Category	Revenue	expenses	net income
K-GAAP	2,932,394,355,069	2,932,138,968,358	255,386,711
<adjustment>			
defined benefit	-	(184,877,764)	184,877,764
employ benefit	-	180,433,454	(180,433,454)
deferred tax	-	22,081,972	(22,081,972)
others(i.e. change in revenue)	(495,391,393)	-	(495,391,393)
total adjustment	(495,391,393)	17,637,662	(513,029,055)
K-IFRS	2,931,898,963,676	2,932,156,606,020	(257,642,344)

source : Public Institution ALIO(All public information in One) System, NRF, No 23. report of audit

총수익은 현금주의로 인식한 일부 수익을 발생주의로 전환함으로 인해 총수익은 495,391,393원(0.02%)이 감소하였고, 확정급여채무에 대하여 보험수리적 방법 평가에 따른 퇴직급여는 184,877,764원이 감소하고, 실제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 인식에 따른 급여는 180,433,454원 증가하였으며, 세무조정 항목별로 일시적차이 조정액에 대한 법인세비용이 22,081,972원 증가되어 총비용 17,637,662원(0.001%) 증가되었다. 또한 급여 증가 및 수익의 감소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513,029,055원(200.88%) 감소하였다.

### 4.3 경영평가지표에 미치는 영향분석

재단은 준정부기관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분류되지만, 자산규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 포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이 50인 미만인 기관으로 인해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강소형 유형으로 분류된다[14]. 경영평가 평가지표에서 리더십, 책임경영, 경영효율 및 주요사업 범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K-IFRS 도입 시 경영평가

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는 경영효율 범주이다. 경영효율 범주는 업무효율(노동생산성), 재무예산성과(계량관리업무비) 및 총인건비 인상을 총 3개로 구성되어져 있다.

<Table 9> impact on business efficiency

category	measure	accounts effect	↑/↓
labor productivity	value added/avg. # of employees	income(loss) before income taxes, wage	↓
administrative	administrative expenses/sales	sales, wage	↑
% change in wage	(current-prior) wage/prior wage	wage	N/A

노동생산성은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하는 상향지표로 부가가치를 평균인원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된다[15]. 부가가치가 중요한 사용되는 바, 이 때의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에서 인건비, 순금융비용,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항목의 합으로 산출되어 진다. IFRS 도입으로 미치는 항목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와 인건비이다. 계량관리업무비는 재단의 관리업무비 절감 실적을 평가하는 하향지표로 관리업무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된다[15]. 관리업무비는 손익계산서상의 사업비와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액에서 비정규직 인건비, 비상임이사 인건비,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은 가산하고, 직접사업비, 사업비성 경비(개인심사평가비), 감가상각비, 교육훈련비,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 세금과공과 및 수선유지비는 차감한 합으로 산출되어지고,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에 해당한다. IFRS 도입으로 미치는 항목은 매출액과 인건비이다. 총 인건비 인상은 총인건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의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져 있으며[15], IFRS 도입으로 미치는 항목으로 인건비가 해당되나, 계산 템플릿에서 조정항목이 존재하여 설계되어 전환 효과가 상쇄되어 미치는 금액적 효과는 없다.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화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측정되는 경영효율 범주의 평가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로부터 사업자금을 수취할 때가 아닌 사업수행으로 비용을 인식할 때 대응되도록 수익인식시점이 변경되어 매출액(영업수익)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의 금액이 변동이 예상되고, 퇴직급여와 경영평가성과급 금액의 변동이 예상되어 노동

생산성의 부가가치 및 계량관리업무비의 인건비 및 매출액에 변동 예상액이 포함되어 두 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4 결산 주요 지표 분석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하에서는 재단의 2012 회계연도 말 기준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K-IFRS를 각각 적용했을 때의 결산 분석을 통해 공익성과 기업성이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한다. 2012 회계연도 말 기준에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적용했을 때 재단의 수익성 분석한 결과, 일반기업회계 기준보다 K-IFRS 적용 시 수익인식시점의 변경으로 영업수익 감소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손실)이 동시에 감소되어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은 0.02%씩 감소, 총자산순이익률은 2.68% 감소 및 자기자본 순이익률 77.8% 증가하였다. 또한,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자기자본에도 감소효과로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Table 10> Impact on profitability (unit : %)

category <sup>21)</sup>	NRF		other quasi-gov.(87)	
	K-GAAP	K-IFRS	K-GAAP	K-IFRS
operating income/sales	-0.04	-0.06	6.6	6.7
net income/sales	0.01	-0.01	1.8	2.0
net income/assets	0.21	-2.47	1.6	1.6
return on equity	6.56	84.36	7.4	17.4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재단은 영업수익 중 수탁사업수익의 비중이 99%에 해당되며, 해당 비용에 대응하여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영업이익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준정부기관 전체 평균에 비해 수익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2012 회계연도 말 기준에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적용했을 때 안정성 분석한 결과, 일반기업회계기준보다 K-IFRS 적용 시에 유동비율이 9.9% 증가, 자기자본비율은 9.25% 감소하였다. 유동비율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4조의 2 및 제44조 3의 잔여 정부보조금 및 위탁자산 처리이다. 정부보조금 및 위탁자산의 미집행분은 관련

21)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100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평균)×100  
 자기자본순이익률=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평균)×100

계정의 차감 표시함으로써 유동자산 1,110억 원과 유동부채 1,060억 원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유동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당기순이익의 감소가 자기자본이 5억 원 감소로 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하였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로 인해 비율산출에서는 제외하였다.

<Table 11> Impact on Stability (unit : %)

category <sup>22)</sup>	NRF		other quasi-gov.(87)	
	K-GAAP	K-IFRS	K-GAAP	K-IFRS
current ratio	105.47	115.37	235.4	182.6
debt ratio	3,008.83	-1,757.28	358.7	1,021.0
equity ratio	3.22	-6.03	21.8	8.9
return on equity	6.56	84.36	7.4	17.4

준정부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재단도 부채총액보다 자기자본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산출되어, 지속적인 부채금액 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5 K-IFRS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변경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단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K-IFRS로 전환함으로써 인해 확정급여채무, 종업원급여채무, 조정액에 대한 이연법인세 효과, 정부보조금 및 수탁사업자금 및 수익인식 변경 등 주요 현안별 회계정책 결정에 따른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재무적 영향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기존의 기준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경제적 실질의 다양한 측면이 새로이 부각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이에 대한 재단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제표의 변화로 인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회계원칙 및 적용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인해 기관평가에서 새로이 부각되는 평가방법 및 이에 관한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매년 실시되는 기획재정부 주관의 경영평가는 K-IFRS에 따라 산출된 재무제표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평가한다. 이는 K-IFRS 도입 후 재무제표가 경제적 실질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K-IFRS에 따른 회계원칙 중 기관평가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통해

22)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100



왜곡될 수 있는 금액적 효과를 상쇄시켜 주는 방안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연차수당 등 종업원급여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을 지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와 동일하게 현금주의로 평가한다. 반면에 노동생산성 및 계량관리업무비 지표는 K-IFRS에 따른 발생주의로 평가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실질과 평가에 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인해 재단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항목별 기준 적용으로 득점부분에 큰 변동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K-IFRS 도입은 회계투명성 개선과 이로 인한 재단의 재정투명성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재정상태의 중요한 변화로 정부보조금 및 수탁사업자금 계정과목 등으로 인하여 자산총액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규모적 측면의 변화는 일견 자산 담보력 축소로 이어져 K-IFRS 도입 전과 후의 자금조달비용이 달라 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이와 같은 우려는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재단의 현금성자산 보유액은 도입 전과 큰 차이가 없으며, 또한 설립 이후부터 재무상태표 상 금융부채의 계정과목이 없었던 바, 이는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의 특성 및 업무형태로 볼 때 향후에도 자금조달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K-IFRS 도입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재정상태는 최근 정부정책 중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공공기관 부채절감 문제와 연계되어 재평가되어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과제인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sup>23)</sup> 41개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sup>24)</sup>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안정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측정되는데 2012 회계연도 말 기준의 부채비율은 -1,757.28%로 산출되었다. 이는 수익인식 변경 등으로 인한 미처리결손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시적인 수익인식 변경의 효과가 종료된 2013회계연도 말 기준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미처리이익잉여금이 양(+)의 값을 가져왔다. 이에 따른 부채비율은 3,415%로 산출되었다.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은 데에는 업무형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재단의 영업수익(매출액)은 대부분이 수탁사업수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익인식시점이 사업자금을 수취할 때가 아닌 사업수행으로 비용을 인식할 때이므로 영업수익이 거의 0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로 자기자본이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하여 부채비율이 크게 산출되는 것이다. 이에 재단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해연도 사업비 등에 대한 조기 집행으로 미지급금 감소를 유도하고,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준비하여 관리주체를 기관에서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순확정급여채무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재무상태표에서는 정부보조금 및 수탁사업자금 계정과목 등으로 인하여 자산총액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저한 규모의 감소로 인한 재무적 영향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시되므로 중요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중요한 의사결정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접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K-IFRS 도입으로 인해 변화된 재무정보로 인하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이 감소하고, 당기순이익 감소한 재무제표에 경영악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재단은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K-IFRS 최초 채택연도의 재무제표는 전환일로부터 재무정보를 전환하여 비교 표시함으로써 이해 비교가능성을 향상시켜 신뢰성이 유지되었다.

##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준정부기관인 재단의 K-IFRS 도입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도입과정에서 검토된 주요 회계현안 및 재무상태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를 파악하였다. 국제자본시장의 자유화에 따라 기업들이 통일된 회계기준을 원하는 추세로 2007년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수립하여 2009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공공기관은 국민생활 및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사회전반의 경제적·기능적 중요

23) 공운법 제39조의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

2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3.12.11.),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성을 감안할 때 IFRS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9년에 ‘공공기관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2010년 12월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7호)이 일부 개정되어 공기업은 2011년, 준정부기관은 2013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로드맵 추진일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 국민경제적 역할과 책임 수행으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2013년부터 K-IFRS 도입 의무가 된 준정부기관인 재단은 K-IFRS 도입 실제 추진사례를 통하여 K-IFRS을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하였다.

K-IFRS 도입과정을 통해 제안된 주요 회계현안은 재무적 영향분석 및 현안별 중요도에 따라 10개 도출하여 현안별 결정사항을 다음과 제시한다. 첫째, 재무제표 표시방법은 재단의 특성 및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무상태표(비금융업)와 포괄손익계산서(성격별 1형)로 선택하였다. 둘째, 자산계정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은 현행 원가법 회계처리방법과 동일하여 현행 회계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원가모형을 채택하였다. 또한 내용연수는 실제 및 경제적 실질 내용연수는 다소 차이가 났지만 정부보조금 효과로 인해 재무적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점 등 중요성 관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투자부동산과 무형자산은 정의에 부합하게 계정과목을 재분류하였다. 임차보증금은 재무정보의 정확성과 정보산출 과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계약기간 5년 이상, 1,000만원 이상)에 부합하는 경우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보조금 및 수탁사업자금은 관련 이전수입과 위탁사업비의 미집행분에 대해서 회계기준 제44조에 의해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여 자산과 부채총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셋째, 수익인식은 정부출연금과 위탁사업비의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적용하였다. 넷째, 비용 및 부채계정과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와 종업원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추정된 금액을 근로 용역제공 회계기간에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였다. 또한 확정급여형(DB)퇴직급여제도 하에서의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를 보험수리적 기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연법인세는 K-IFRS 관련 규정을 도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각 현안별 대안으로 인하여 2012년말 기준으

로 K-IFRS로 전환했을 때 재단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확정급여채무, 종업원급여채무, 조정액에 대한 이연법인세 효과, 정부보조금 및 수탁사업자금으로 인해 재무상태에 미치는 금액으로 자산총계 1,109억 원(91.7%)과 부채총계 1,064억 원(90.9%)가 감소하였다. 이에 자본총계의 경우도 수익인식변경으로 인해 45억 원(115.4%)가 감소하였다. 둘째, 경영성과에 미치는 금액으로 총수익은 5억 원(0.02%)이 감소하였고, 총비용은 0.2억 원(0.001%)이 증가하였다. 이에 당기순이익은 급여 증가 및 수익의 감소 등에 따라 5억 원(200.88%)가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지표인 노동생산성, 계량관리업무비 및 총인건비 인상은 수익인식시점 변경으로 인한 영업수익 감소, 퇴직급여와 경영평가성과급 등 조정내역으로 인한 인건비 변동예금액이 포함되어 지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K-IFRS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세스 재정립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회계선진화 수행으로 재단의 회계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되었다. 둘째, 아직 K-IFRS 도입 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의 도입, 특히 연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에게 내·외부 분석방법 및 업무 수행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유사사례로 활용할 수 있었다. 셋째, 재단은 공공기관이면서 국민경제체계(SNA) 국민경제 구조에서 일반정부(중앙정부)로 분류된다[16]. 국가의 한 부문으로서의 K-IFRS를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무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ACKNOWLEDGMENTS

This paper is based on dissertation paper of the first author(Kim, Do Hyeong), Master of Management and Information,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Authors thank to committee members (Jung, Kyu Eon and Lee, Dong Heon) of dissertation paper and their constructive comments

## REFERENCES

- [1] S. J. Sung, A Study on Improvement of Corporate

Law System with Adoption of K-IFRS, p.3,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2.

[2] Understanding and Preparing IFRS, p.150,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09.

[3] J. I. Jang · W. H. Kim · K. A. Jeon · D. G. Jung, Implications and Expected Effects of Adoption of IFRS by the State-Owned Enterprise, p.23,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13.

[4] Statement of Accounts 2013 (I): Public Enterprise, p.7,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4.

[5] Statement of Accounts 2013 (I): Quasi-government Entity, p.11,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4.

[6] J. O. Kim, Adoption of IFRS in KT&G Case, Korea Accounting Journal. Vol 19, pp.295-313, 2010.

[7] J. K. Chun · Y. H. Kim · S. C. Kim, A Case Study of Implementing IFRS: Lessons and Implications from the KEPCO Group. Korea Accounting Journal. Vol 19, pp.149-182, 2010.

[8] K. H. Pyo, A Case Study on Adoption Process and F/S Effects of IFRS in Energy Public Corporations, Sungkyunkwan University, 2012

[9] H.Y. Ma · S. J. Park, A Case Study on the Adoption of K-IFRS: focusing on the Ground Radio Wave Broadcasting System Secto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5, pp.135-144, 2013.

[10] S. H. Jeong, The Effect of K-IFRS Implementation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Public Institutions, Government Accounting Research. Vol 11, No 2, pp.33-59, 2013.

[11] Y. H. Park · S. H. Cho · S. J. Park, A Case Study on Implementing K-IFRS: Lessons and Implications from the A public-sector, Korea Business Review Vol 17, pp.1-39, 2013.

[12] Analysis of Government Budget for FY 2015 (I), p.192,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4.

[13] FY 2013 Specialization Training Book for Quasi-government Entity, p.18, p.36,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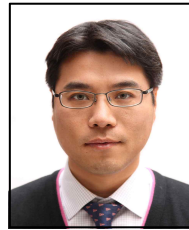
[14] Handbook of Evaluation of Business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 for FY 2013, p.9,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3.

[15] Evaluation Report 2013 of Business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 p.42-46,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4.

[16] S. H. Hong, Issues on Finance Statistics in Public Sector,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Forum, Vol 208, p.8-20, 2013.

[17] <http://www.ifrs.org>

김도형(Kim, Do Hyeong)



- 2005년 2월 : 창원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사)
- 2015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07년 4월 ~ 현재 : 한국연구재단
- 관심분야 : 재무회계, 정부회계
- E-Mail : dhkim@nrf.re.kr

오광욱(Oh, Kwang Wuk)



- 1999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2002년 8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10년 8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0년 9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재무회계, 회계감사, 조세전략

· E-Mail : avnini92@korea.ac.kr

박성중(Park, Song Jong)



- 2001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 2006년 8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14년 8월 :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박사)
- 2005년 10월 ~ 2010년 2월 : Ernst & Young 한영회계 법인 금융사업 본부 근무

· 2010년 3월 ~ 현재 :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세무회계, 재무회계, 회계정보시스템

· E-Mail : sjpark@anyang.ac.kr